

첨부파일 2. 소비자 주의사항

□ '고수익 보장 광고'나 '할인가 프로모션'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.

- 무료체험 문자,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,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(예) 수익률 〇%(〇배) 보장, 수익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 또는 서비스 〇개월 연장, 〇천만 원 투자로 월 〇% 이상 수익 보장, 프로모션 기간 할인

□ 중도해지 시 과도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.

- 중도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.
- (예) 계약금액(납부금액)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일 이용료 산정,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추가 9개월은 무료 서비스라며 3개월을 기준으로 이용료 산정,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계약 해지 불가, 청약철회기간(7일 이내)에도 해지수수료 청구 등

□ 무료 서비스,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지 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 확인한다.

- 회원 가입 시 교육자료, 종목적정가 검색기, 여행상품권 등을 일괄 제공하고 해지 시 과도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전문가비용(종목 추천비용)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.
- (예) 기초 교육자료 및 실전 교육자료 각각 50만 원, 종목 적정가 검색기 40만 원

□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,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.

-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말고 이용을 결정한 이후 결제를 진행한다.
- 해지 거부,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,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*를 하는 것이 좋다.
- *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을 카드사에 확인 필요
- 해지요청 시 문자, 통화 녹음,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.

※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, www.ccn.go.kr)에 도움을 요청한다.